

주요 업무 사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 정규직과 별도 노조를 설립한 후 교섭단위 분리를 요청한 사안에서 교섭단위 분리 기각을 받아낸 사례(서울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20누45270 판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으로 정규직이 된 운전, 청소, 경비 등을 수행하는 지원직군 근로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A 노동조합은, 일반 사무직군 등 그 외 직군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 B와의 교섭단위를 분리해 달라는 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은 해당 사건을 노동위원회에서 수임하여, (i) 지원직군과 그 외 직군 간 대부분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고 단지 업무의 특성이나 난이도로 인한 급여의 차이만으로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ii) 정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으며, (iii) 해당 사업장에는 분리교섭의 관행이 없었고, (iv) 교섭창구단일화 원칙의 취지, 공공기관의 예산 특성, 공정대표의무의 존재 등에 비추어볼 때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크지 않다고 주장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단위 분리신청의 기각을 받아내었습니다.

이에 A노동조합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교섭단위 분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되는 영역이고 월권이나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법원이 번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1심 뿐만 아니라 2심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